

Jisung Horizon Newsletter

October 2010 Vol.3. No.25

01 열려라 중국

- 중국의 정책과 법령의 관계 (명한석 변호사)

05 Vietnam LIVE!

- 베트남 내 공장건물 임차 시 유의사항
(김주현 변호사·JS Horizon Vietnam Hanoi 지사장)

07 주목! 이 판례

- 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 주체 : 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10 최신 법령

- 공공기관의 해외사업활성화 방안 마련 등
- 거주여권 실효제도 폐지 등

11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 [Global 베트남] 인구 증가율 '쑹쑹' ...소비재 산업 '유망' (변희경 변호사)
- [Global 캄보디아] 한국 투자 '추춤' ...일본·베트남 '적극' (유정훈 변호사)
- [Global 러시아] 다시 문이 열린 '도전과 기회의 땅' (류혜정 변호사)

13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비즈니스-중남미팀 발족

16 업무동향

- 지평지성, 한국투자증권, LG상사, Barclays가 공동 GP로 참여한 'Global Dynasty 해외자원개발 투자 전문회사'의 설립 업무 수행

18 지평지성 단신

- 법무법인 지평지성, 아름다운 나눔장터와 함께 '도전! 뷰티풀 그린벨' 개최
- 이호원 대표변호사,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정기 회의 참석
- 양영태 대표변호사, KRX 합작 라오스 증권거래소 출범식 참석
- 김범희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변호사연수 과정에서 특허분쟁 처리실무에 관한 강의
- 이소영 변호사, 문화체육부 주관 '제3차 저작권 교육 포럼'에서 '저작권 계약 실무의 이해' 발표
-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상공회의소 주최 교민 초청 행사에서 법률세미나 진행

25 영입인사

- 강아론 브라질변호사

26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 임지아 변호사
- 조병규 변호사
- 정철 변호사
- 김도요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지평지성
JISUNG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8, 11층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http://www.js-horizon.com> E-mail: master@js-horizon.com
Copyright © JISUNG HORIZ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열려라 중국)

중국의 정책과 법령의 관계



명한석 변호사

1. 서론

가. 중국 법령의 체계

중국의 법령, 즉 법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 (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 법규(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 규장(부문 규장과 지방정부 규장), 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의 법규, 경제특구의 법규, 국제조약과 협정.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이며, 나머지는 당해 지방이나 지역에만 효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효력 순위는 헌법 - 기본 법률 - 기타 법률 - 행정법규 - 지방성 법규 및 규장의 순입니다. 제정 및 개정 주체는 기본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기타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부문 규장은 국무원 소속 각부나 위원회가 됩니다. 지방성 법규나 지방정부 규장은 당해 구역의 상황에 따라 제/개정 주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 중국 법령의 특징

중국 법령의 경우 그 특징은 우선 헌법과 기본 법률, 그리고 지방성 법규 중 지방 인민대표대회가 제/개정하는 일부 법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 각 부처 등이 제/개정하는 법규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 등의 경우에는 추상적 규정이 상당히 많아 실제 그 집행에는 행정부가 제/개정하는 행정법규 등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법규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 관련 부처에서는 (통상 공포되지 않는) 내부적 해석 지침이나 Guideline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률만 보면 좀 허술해 보이는 중국의 법규는 행정법규 및 내부 지침 등을 통하여 상당히 촘촘한 규율을 통일적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는 입법법(행정절차법)과는 달리 법령을 제/개정함에 있어 공론의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의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보면 법령의 제/개정에는 있어 민주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 대응하는 입법절차가 상당히 신속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지침 등을 통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재량이 아닌 통일적 기준에 의하여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가끔 관련 법령이 반포되었으나 내부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필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국 법령의 경우 생각보다 자의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정책 변화를 뒷받침하는 법령의 입법작업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2. 사례: 2008년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한 10대 조치와 지원 입법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아 중국 정부는 그 위기 극복책으로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한 10대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즉, 2008년 11월 5일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여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 원 총리는 2008년 이래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세계 경제 성장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국제 경제 환경 중 불안 요소가 증가되어 중국에 대한 영향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 운용에서 새로운 상황 및 문제-경제성장의 둔화, 기업의 이윤과 재정수입의 증가 속도 감소, 자본시장의 침체-가 발생하였다고 강조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하였습니다. 이에 중국정부는 융통성 있고 신중하게 거시적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국내수요를 확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생공정, 인프라건설, 생태환경 건설과 수입이 낮은 국민들의 수입수준을 제고하는 등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0대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10대 조치의 내용은 (1) 보장(保障)성 아파트의 건설 촉진 (2) 농촌민생공정과 농촌인프라건설 확대 (3) 철도, 도로, 공항 등 SOC 사업 추진 (4) 의료/위생, 교육, 문화 등 사회사업의 발전 촉진 (5) 탄소배출량 감소와 생태환경건설공사 추진 (6) 자주적인 혁신과 산업구조조정 추진 (7) 재해복구 사업 추진 (8) 국민들의 수입 제고, 특히 농민 등 저소득층 국민들의 수입 제고 (9)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 전면 시행 (10) 신용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지원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4조 위안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10대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 조치들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 (5)와 관련하여 국무원 판공청은 "2009년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축 업무 촉진을 위한 통지"를 2009년 7월 19일 자로 공포하고 동일자로 시행함.
- (6)과 관련하여 국무원 판공청은 "발전개혁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자주적 혁신성과의 산업화 촉진 정책의 전달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통지"를 2008년 12월 15일에 공포하고 동일자로 시행함.
- (9)와 관련하여 재정부는 "국가세무총국의 전국적 증치세 개혁을 시행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를 2008년 12월 19일자로 공포하고 2009년 1월 1일자로 시행함.
- (10)과 관련해서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현행 일부 신용대출 감독관리 정책 조정을 통한 안정적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관한 통지"를 2009년 1월 10일자로 공포하고 동일자로 시행함.

2008년 11월 5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입법조치를 빠르면 한달 열흘 내에, 늦으면 8개월 가량 후에 시행하였다. 물론 입법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은 바로 시행하였습니다. 4조 위안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 수행을 위한 저 무시무시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한 입법 속도가 보이십니까? 증치세(부가가치세) 같은 중요한 세제의 개혁을 위한 조치도 한달 보름 안에 시행되었습니다!

3. 결론

필자가 중국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가장 답답해 하는 사항은 중국에 대한 편견입니다. 대표적인 편견 - "만만디", "관시", "상요유정처, 샤요유뚜이처"(上有政策, 下有對策;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엔 대책이 있다)

더 이상 중국은 "세월아, 네월아"의 나라가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속도전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중국은 인치(人治)의 나라가 아닙니다. 법치(法治)의 나라입니다. 민주적인 의미가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법만능주의에 가깝긴 합니다만..

더 이상 중국은 빠져 나갈 구멍이 많은 그런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책이 만들어지고 공포되는 관련 입법조치가 취해지며, 이에 따라 내부 지침들이 뒷받침되어 적어도 각 지방단위에서는 통일적인 규율이 이루어 집니다.

중국은 행정, 입법 양자를 모두 최대한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필요한 국가정책을 관철해 가는 나라입니다. 행정부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표하면 같은 행정부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는 중국과 관련한 사업을 하려면 정책 방향을 살피고 그에 따른 입법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예민하게 감지하여야 합니다. JS-Horizon

(Vietnam LIVE!)

베트남 내 공장건물 임차 시 유의사항



김주현 변호사·JS Horizon Vietnam Hanoi 지사장

한동안 세계 금융위기 등의 요인으로 베트남 내 한국투자자의 진출이 주춤했었지만, 최근에 다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투자자의 베트남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투자자들이 인건비 및 토지 임대료 상승 등의 요인으로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정부에서는 이러한 외국인의 제조업투자 진출에 대하여 가능하면 국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차해서 공장건물 및 설비투자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기간 등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 공장건물을 임차해서 투자를 하는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활용해 베트남회사가 국가로부터 제조업허가를 받아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해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공장설비를 갖춘 후 이를 통째로 외국인투자자에게 임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장건물 및 설비를 통째로 임차해 투자허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공장건물 및 설비를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투자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 투자허가 취득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회사가 공장건물 및 설비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토지법상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한 토지 위에 건립한 공장건물은 개인소유이므로 공장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투자허가서 발급과정에서 투자허가기관에서는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 위에 신축한 공장건물을 통째로 외국인투자자에게 임대하고자 할 경우, 당초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투자허가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가 공장건물 임대를 통해 투자허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그러한 공장건물을 소유한 베트남회사가 부동산 임대업(공장건물 포함)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사업자등록증 상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지, 그리고 그리고 그 베트남회사가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해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허가를 받을 때 역시 부동산 임대업(공장건물 포함) 허가(투자허가서 상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허가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 외에도, 외국인투자자가 3년 내지 5년의 비교적 단기기간의 공장건물 및 공장설비 임대계약을 근거로 투자허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 고용근로자의 임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체불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임금 등 체불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보장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봉제업 등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의 경우 임금 등 체불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지역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체불하고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임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보장책에 대해서 베트남 투자법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투자허가기관이 투자허가 발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보장책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거나 투자계획 자체를 철회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방법에 대하여는 투자허가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JS-Horizon

(주목! 이 판례)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 주체 : 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1. 서론

대상사건은 확인의 소의 이익,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상속재산분할의 합의 요건 등 여러 쟁점을 다루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쟁점은 "명의개서를 실기(失期)한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원심의 요지

원고는 문제된 주식의 소유권을 상속 또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양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원고가 문제된 주식들을 취득한 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보유현황에 따라 주식병합, 감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유상감자,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문제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이유로 소유권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 또한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나6199,2008나6205(병합) 판결].

3. 해당 쟁점에 대한 대상 판결의 요지

가.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지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추상적으로 갖는 기대권을 의미하므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여진 배정일 현재 주주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될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 또한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 또는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며,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귀속되는 주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실질상 주주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상 주주인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의개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데, 상법 제337조 제1항은 "기명주식의 양도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만 취득자가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의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주주로의 판단 시점이 언제인지

주주명부에 기재된 시점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일정시점에 있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나, 결국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일 당시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바로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로 해석될 것입니다. 대상판결에서도 주주명부 폐쇄 당시 원고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는 구체적인 신주인수권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4. 주식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법률관계

대상판결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식양수인과 "주식양도인"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이와 같이 볼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는 주식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계약의 문제이지 회사법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때 과연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해야 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관의 규정이 없는 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당되는 특별한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학설(명의주주 귀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있어 이미 주식과 관련한 모든 권리가 주식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주식양도 당사자 사이의 의사나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주주인 주식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법적 근거를 부당이득반환법리에서 찾는 부당이득설, 양도인을 (준)사무관리의 당사자로 보는 사무관리설 또는 준사무관리설이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JS-Horizon

(최신 법령)

1. 공공기관의 해외사업활성화 방안 마련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기획재정부령 제170호, 2010. 9. 30. 시행)

1.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6조 제5항 제3호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이 보유재산 매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6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가 1인일 경우에도 입찰이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8조 제5호를 개정하여 공공기관이 일정한 중소기업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 다운로드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기획재정부령 제170 호, 2010. 9. 30. 시행\)](#)

2. 거주여권 실효제도 폐지 등

: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393호, 2010. 9. 20. 시행)

1. 국외여행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제6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국외체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1년에서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해외이주자에게는 거주여권을 발급하고 거주여권의 소지자가 입국한 뒤 국내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거주여권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실효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됨에 따라 여권 관련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6조 제4항을 삭제하여 거주여권의 실효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393호, 2010. 9. 20. 시행\)](#)

JS-Horizon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 (Global) 면에 정기 기고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기고하고 있으며, 기고되는 내용은 월간 지평지성 뉴스레터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달의 기고]

한경BUSINESS

No. 772/773 | 2010. 9. 22/29.



[Global 베트남]

1억 소비 시장을 잡아라

인구 증가율 '쑥쑥'...소비재 산업 '유망'

베트남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대상지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 인구는 지난 10년동안 매년 100만 명씩 증가해 2009년 4월 1일 현재 8584만699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1.2%다. 이 추세대로라면 향후 10년 내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동 연령층인 15~64세 비율이 전체 인구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 연령층이 많다는 것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인구구성은 향후...

변희경 변호사

hkbyun@js-

horizon.com

[PDF](#) [e-Link](#)



유정훈 변호사
yoojh@js-
horizon.com

[Global 캄보디아]

포기할 수 없는 땅

한국 투자 '주춤' ...일본 · 베트남 '적극'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한국 로펌의 지사장 변호사로 3년간 근무하는 동안 프놈펜에는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가 많았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계 건설 회사가 시공한 '골드타워 42'와 '프놈펜 타워'로 프놈펜 중심가인 모니봉 도로를 따라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캄보디아는 인구 1300만 명, 면적 약 18만Km²로 200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715달러 수준의 저개발 국가다. 2~3년 전 한국계 건설사 및 시행사들이 진출해...

PDF

e-Link



류혜정 변호사
hjryu@js-
horizon.com

[Global 러시아]

되살아나는 러시아 경제

다시 문이 열린 '도전과 기회의 땅'

지난 9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열고 에너지·자원, 극동 시베리아 개발 등 경제협력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동북아 평화 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9월 8일에는 푸틴 총리가기아차를 생산하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동을 중단한 이즈아프토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기아차 제품 재생산을 위해 기아차 관계자를 면담했다. 메드베데프...

PDF

e-Link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 (홈페이지)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 (PDF)

JS-Horizon

(지평지성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비즈니스-중남미팀 발족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 주목해 왔습니다.

지평지성은 중남미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M&A, 금융 및 해외투자 관련 전문가들로 중남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브라질 현지의 컨설팅회사와 연계하여 브라질 현지 투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중남미 지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다수의 브라질 현지 로펌들과의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로펌 최초로 교포 2세 출신의 브라질변호사가 서울 본사에 합류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자체적인 브라질 및 중남미 관련 법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중국,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 등지에서 쌓은 해외업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증가할 중남미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지역적 전문성에 기반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

-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종합적 자문
- 투자허가 취득 및 회사설립 관련 자문 및 실무 대행
-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관련 자문
- 현지 기업 M&A 및 지분인수 관련 자문 및 법률실사 업무
- 건설 및 부동산 개발, 부동산 매매 등에 대한 자문
- 자원개발, SOC 관련 자문
- Project Finance 등 금융 관련 자문
- 자본시장 관련 자문
- 현지법인의 운영, 조직변경 등에 대한 자문
- 무역 관련 자문 및 소송

[주요 실적]

- 물류회사의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 페루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자문
- 무역업자간 분쟁에 관한 자문

[브라질 현지 로펌 네트워크] (ABC 순)

- Dantas Lee Brock e Camargo Advogados
- Demarest e Almeida Advogados
- Machado Associados
- Madrona Hong Mazzuco
- Mattos Filho Veiga Filho Marrey Jr e Quiroga
- Pinheiro Neto Advogados
- Siqueira Castro Advogados
- Souza Cescon Avedissian Barrieu e Flesch
- Tozzini Freire Advogados
- Velloza, Giroto e Lindernbojm Advogados Associados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주요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신민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



이유경 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강아론 브라질변호사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지평지성, 한국투자증권, LG상사, Barclays가 공동 GP로 참여한 'Global Dynasty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업무 수행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한국투자증권, LG상사, Barclays가 공동 GP로 참여하여 설립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 'Global Dynasty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지식경제부 주관하에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투자개발전문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2009년 6월부터 1차 및 2차에 걸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설립이 추진된 것으로, 사례가 거의 없어 불확실했던 법률적, 경제적 여러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10월 8일 금감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을 마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동 투자전문회사는 약 1천억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3천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며, 설립과 동시에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 이데일리 - 국내 두번째 해외자원개발PEF 뜬다 (2010. 10. 5.)

[담당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이은영 변호사



박형준 미국변호사



공수한 미국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구상수 회계사



류용현 회계사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법무법인 지평지성, 아름다운 나눔장터와 함께 '도전! 뷰티풀 그린벨'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10월 9일 오후 12시 30분부터 한강시민공원 독섬지구에서 아름다운 가게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독섬 아름다운 나눔장터'에 참여한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눔과 환경 퀴즈왕을 선발하는 '도전! 뷰티풀 그린벨' 퀴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전! 뷰티풀 그린벨' 퀴즈 대회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나눔과 환경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알리고 동참토록 하기 위한 참여형 나눔환경교육 이벤트로서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일반인 25명과 학생 25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도전! 뷰티풀 그린벨' 우승자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직원들이 소외계층 어린이 도서지원을 위해 모금한 300만원을 기부했으며 일반부 및 어린이부 최고 도전자들은 아름다운 가게가 준비한 도서상품권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 아름다운 가게 - 강성 대표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인터뷰 (2010. 10. 14.)
- 아름다운 가게 - 세상을 울려라! 도전! 뷰티풀 그린벨! (2010. 10. 14.)
- 나눔뉴스 - 아름다운가게, 독섬 벼룩시장에서 '도전 뷰티풀 그린벨' 개최 (2010. 10. 8.)

[관련링크]

- 독섬 아름다운 나눔장터 홈페이지 : <http://www.flea1004.com>
- 독섬 아름다운 나눔장터 게시판 - 공부해서 남주자 "뷰티풀 그린벨" 시상리스트 (2010. 10. 11.)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행사사진]



'도전! 뷰티풀 그린벨' 행사 부스



'도전! 뷰티풀 그린벨' 참가자 접수



'도전! 뷰티풀 그린벨' 행사 진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도전! 뷰티풀 그린벨' 우승자의
소외계층 어린이 도서지원 기금 전달



아름다운 나눔장터(김수열 사무처장),
지평지성(강성 대표변호사)에 기념품 전달



법무법인 지평지성 · 아름다운 나눔장터, '도전! 뷰티풀 그린벨' 개최 기념사진 (2010. 10. 9.)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이호원 대표변호사,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정기 회의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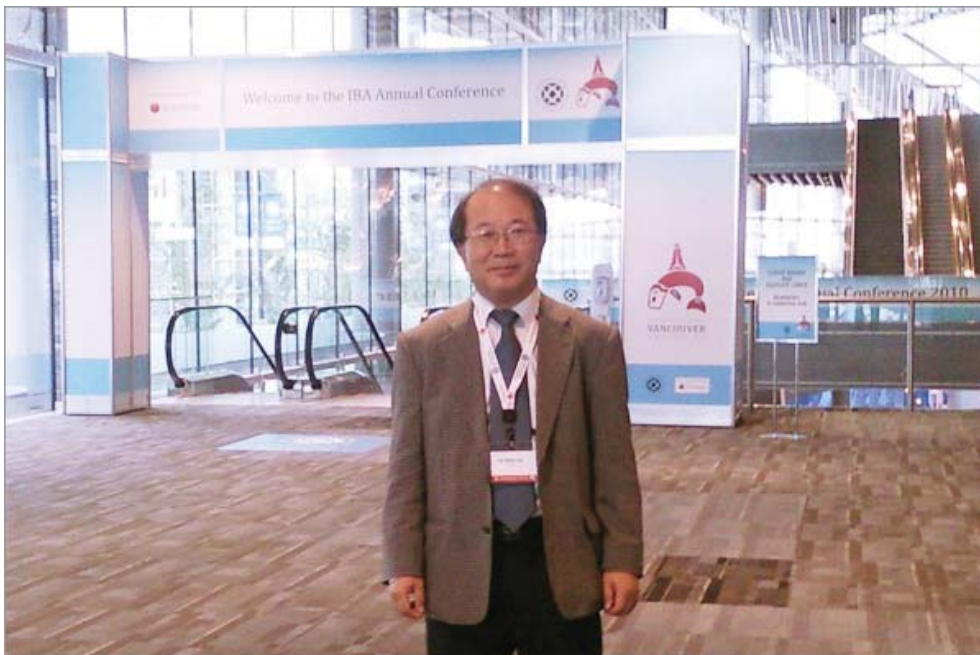
이호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정기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약 4,500명의 각국 변호사들이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도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30명의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10개의 포럼과 16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각종 국제적 법률 이슈를 논의하고, 각국 변호사들의 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6일 저녁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Korean Night에서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각국 변호사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IBA의 내년 정기 회의는 2011년 8월 초 두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IBA 정기 회의에 참석한 이호원 대표변호사 (2010. 10. 3. - 10. 8.)

JI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양영태 대표변호사, KRX 합작 라오스 증권거래소 출범식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10월 10일 오전(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라오스 증권거래소(Lao Securities Exchange, LSX) 출범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라오스 증권거래소(LSX)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KRX)와 라오스 정부가 합작으로 설립을 준비해 온 것으로 이번 출범식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주식거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한국거래소(KRX)를 대리하여 라오스 증권거래소(LSX) 설립 관련 자문을 진행해 왔고, 본격적인 라오스 법률시장 진출을 위해 2009년 11월 라오스 최대 로펌인 "LLC(Lao Law & Consultancy Group)"와 독점적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합작로펌 "JSH-LLC"를 설립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고]

- 한경비즈니스 - [라오스] 자본시장 개방...한국거래소 경영 참여 (2010. 9. 15.)
_이행규 변호사

[관련기사]

- 연합뉴스 - KRX, 최초의 합작거래소인 라오스 증권거래소 설립 성공 (2010. 10. 10.)
- 뉴시스 - 韓라오스 합작 증권거래소 출범...3년 투자 결실 (2010. 10. 10.)
- 아시아투데이 - 韓라오스 합작 증권거래소 출범 (2010. 10. 11.)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김범희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변호사연수 과정에서 특허분쟁 처리실무에 관한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범희 변호사)

IP·IT팀의 김범희 변호사는 지난 9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개최한 변호사 의무연수과정에서 '사례로 연습하는 특허분쟁 처리실무'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위 연수과정은 지적재산권의 대표적 분야인 상표, 저작권, 특허로 이루어졌는데, 김범희 변호사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희승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의 상표, 상품, 서비스표 유사 여부 판단기준'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규호 교수가 '저작권 관련 최근 외국 판례의 쟁점'이라는 주제를 다루었고, 120여 명에 달하는 많은 개업변호사 및 사내변호사가 참가하였습니다.

특허 분야는 변호사들이 평소 실무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데다가 문헌이나 판례만으로는 정확한 이해나 실무에의 적용이 쉽지 않음에도, 특허분쟁 실무에 관한 강의가 드물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김범희 변호사는 공학석사 출신으로서 10년 이상 IP 분야를 전공하며 쌓은 특허 자문과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 분쟁에서의 주요 개념과 처리절차를 구체적인 분쟁 사안을 이용해 설명함으로써, 참석한 변호사들로부터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강의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범희 변호사는 12월 로앤비에서 주최하는 기업실무자 연수과정에서도 '기업실무자를 위한 특허분쟁 처리실무'를 주제로 강의를 계획합니다.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이소영 변호사, 문화체육부 주관 '제3차 저작권 교육 포럼'에서 '저작권 계약 실무의 이해' 발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

IP·IT팀의 이소영 변호사는 지난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개최하는 '제3차 저작권 교육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공공 분야 저작권 교육, 가치의 발견과 증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이소영 변호사는 '저작권 계약 실무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해 공공 업무상 필요한 저작권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경찰교육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법무연수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중소기업연수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공공 분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보안뉴스 - 정부, 공공 분야 저작권 교육 및 가치 발견과 증진 모색 (2010. 10. 6.)

JS-Horizon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상공회의소 주최 교민 초청 행사에서 법률세미나 진행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의 반기일 변호사는 라오스 상공회의소 주최로 라오스 코스모호텔에서 열린 교민 초청 행사에서 다양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로 받은 보수는 비엔티안에 설립 중인 한글 학교에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강아론 브라질변호사
akang@js-
horizon.com

□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수료 (2010)
- 상파울로 카톨릭 대학교 법학 졸업 (2009)
- 상파울로 대학교 행정학 (2006/incomplete)

□ 경력사항

- Rulli e Moretti Advogados, 회사법/부동산, 인턴
- Bank of Brazil, 국제법부, 인턴
- Admitted to the Brazilian Bar (OAB/SP) (2010)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브라질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재브라질교포 2세 브라질변호사 강아론입니다.

저는 상파울로 카톨릭 대학교 법학과를 2009년에 졸업하고 2010년에 브라질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과정을 마치고 9월부로 지평지성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브라질과 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고객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임지아 변호사

jalim@js-
horizon.com

□ 학력사항

- 정신여자고등학교 제78회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 경력사항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서울북부지방법원 예비판사 역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역임
- 대구지방법원 판사 역임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임지아 변호사입니다.

모든 분들의 배려 덕분에 1년간의 뉴욕에서의 유학생생활을 건강하게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동료들, 고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충실하고 진실한 시간들로 앞으로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조병규 변호사

bkcho@js-
horizon.com

□ 학력사항

-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제6회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미국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 Fellow 수료

□ 경력사항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해군법무관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 현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 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송지원변호인단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조병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 있는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Visiting Research Fellow 자격으로 1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9월부터 한국 본사에 복귀하였습니다.

유학과 연수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법률전문가들과 업무경험 및 학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저와 제 주변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의뢰인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정철 변호사

cjung@js-
horizon.com

□ 학력사항

- 순천고등학교 제43회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 경력사항

- 제41회 시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공군법무관
- 참여연대 국제화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Los Angeles에 있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에서 LL.M. 과정을 마치고 회사파트 업무에 복귀 하였습니다.

유학생생활 동안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주력하던 M&A, 회사 Operation, 중국 및 자원/에너지 분야 이외에 중남미 관련 업무로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김도요 변호사

dykim@js-

horizon.com

□ 학력사항

- 광주 동신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수료 (환경법 전공)
-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법학석사)

□ 경력사항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VINA HORIZON LAW GROUP
법인장
- JS HORIZON Vietnam 법인장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김도요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호치민 지사에 2년간 법인장으로 재직한 후, 미국 뉴욕에 소재한 Columbia Law School의 LL.M.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한국 본사로 복귀하였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늘 따스하게 배려해 주셨던 기억으로, 타지에서 건강하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해외에서의 경험과, 유학시절의 공부를 기반으로 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1600 Fax : 02)6200-0800

강북 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00-1800 Fax : 02)6200-0830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0880 Fax : 02)6200-0804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a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856-20-301-9820 Fax : 856-21-264-344